

신청접수번호 : m-RAPA-1803-03-02-1416 호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아래 공사 시행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 1. 공사내용

가. 공사업명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4R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공사 장소(주소)	14218 경기 광명시 광명동 88-14 일대
다. 공사의 종류	공동주택 (V) 건축물( ) 도시철도( )

### 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가.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1. 옥상층 -101동, 103동, 104동, 105동, 108동, 110동 111동
나. 중계장치 설치 위치	1. 옥상층 -101동, 103동, 104동, 105동, 108동, 110동 111동 / 2. 지하층 - 지하2층 103동 /109동 인근 환풍
다. 접지단자 위치	이동통신중계장치의 최근접
라. 전원단자 위치와 용량	이동통신중계장치의 최근접 (4Kw/220V/단자3개 이상)

### 3.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에 대한 사업주체의 협의결과 게시 방법

가.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모델하우스 공개
나.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협의 결과에 따른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함.

4. 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①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 1부 제공 ② 착공설계 신청 전 설계도면 확인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중계설비) ③ 건축물의 착공/준공일정 및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치 등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	--

5. 기타 협의사항	특이사항없음
------------	--------

※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테나,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첨부]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옥외안테나 설계도면 1부.

상기 협의내용 이외의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할 것을 상호 협의하였음.

2018년 04월 11일

(주)에다종합설계감리사무소

대표 이윤상 (인)



이동통신사업자 협의대표

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한국전파진흥협회

